

[별표 1] <개정 2009.5.13>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처분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I.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4차 위 반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1호	업무신고 효력상실			
2.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2호	업무정지 12개월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3호	업무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4호	월) 업무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5. 연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 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5호	업무신고 효력상실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가.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8개월	
나.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6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6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라. 기 타	법 제28조 제 3 항 제1호	시정명령			
7.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30조제1항의 보고·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	법 제28조 제 1 항				

한 때	제9호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가.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나.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라. 「건축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대지 및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미흡의 원인이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2)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 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때 3) 해당 건축물 또는 인근시설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킨 때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사.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4개월)		

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2)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켜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업무신고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업무정지 6개월)		
2)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3)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자.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한 경우					
1)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8조 제 1 항 제1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1개월)
11.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법 제28조 제 3 항 제2호	시정명령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 3 항 제3호	시정명령			

※ ()안은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함